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2. 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11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
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
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상위법령과 일치
(안 제4조제2항)
- 나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개정
(안 제9조의3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2조
(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,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.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4조제1항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을 “25명 이내”를 “15명 이상 25명 이하”로
같은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“부구청장이 되며”를 “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”로
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,
 - 안 제9조의3제2항 중 구청장의 임명·위촉 권한 침해 소지가 있는 “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”를 “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”로 정비하였음.

- 본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

제112조(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2 이상의 시·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.

②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·군수 또는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, 2 이상의 시·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05.1.15., 2008.1.8.>